

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기획경제위원회 이원형 의원

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,
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기획경제위원회 이원형 의원입니다.

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「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,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본 조례는 「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폐지됨(' 23.3.27.)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희망경제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.

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희망경제위원회가 심의

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,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여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.

개정조례안은 제9조의 제목 “(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)”를 “(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장기화되는 불황과 노동시장의 변화로 장애인기업활동에 어느 때보다 신속한 대응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. 이에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장애인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.

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!